

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공고

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「2026년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(제6호 스마트온실, 8호 토경온실)」 임차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3.

순창군수

1. 사업 현황

○ 사업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696번지 일원

○ 대상시설 : 2개소

◇ 스마트 온실 제6호 1개소 (총 면적 1,920㎡)

- 재배작물 : 딸기(단년생 과채류에 한함)

- 온실사양 및 주요설비 :

온실형태 : 철골 비닐온실 (10-2형 구조계산 완료, 측고 5m)

- 주요 기계·설비

외산 양액기(네타팜 1대), 원수탱크(10ton), 알루미늄 2중 수평스크린(1중 보온, 2중 차광), 측면 다겹보온커튼, 천창개폐기, 유동팬, 개별 저압수전 (19kw), 딸기 재배용 배드시설(배지는 없음)

◇ 토경 온실 제8호 1개소 (총 면적 2,048㎡)

- 재배작물 : 엽채 및 과채류 등(단년생에 한함)

- 온실사양 및 주요설비 :

온실형태 : 철골 비닐온실 (08-1형 구조계산 완료, 측고 5m)

- 주요 기계·설비

외산 양액기(네타팜 1대), 원수탱크(10ton), 알루미늄 1중 수평스크린(차광) (보온스크린은 고장으로 사용불가), 측면 다겹보온커튼, 천창개폐기, 유동팬, 개별 저압수전(30kw)

2. 모집 내용

○ 모집인원 : 2명 (또는 2팀 2~3인)

○ 임대면적

- 스마트 온실 제6호 1개소 (총 면적 1,920㎡) 및 공동이용시설 일체
- 토경 온실 제8호 1개소 (총 면적 2,048㎡) 및 공동이용시설 일체

○ 임대기간 : 2026. 8. . ~ 2029. 8. . (계약일로부터 3년)

※ 단,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, 기존 임차농에게는 최대 2년씩 2회까지 연장 계약 가능 (최대 7년 임대 가능, 2025년 개정 지침 반영)

○ 연간 임차료 : 6호(2,123,000원/년), 8호(1,146,000원/년) (매년 7월 중 부과 예정)

- 산정근거 : KOSIS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북특별자치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% 금액 내에서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 요율 “감정평가 금액의 1%로 산정함
(6월 모집공고한 4호 스마트 온실의 2026년 03월 감정평가 금액의 직전(3년전) 모집공고 시 임차료 대비 할인율을 기준으로 2년 기간의 2/3 할인율 적용(11.5% 할인)
- 8호의 경우 보온스크린 고장 사용불가로 임차료 추가 할인율 적용(10% 할인)

3. 모집 일정 및 계획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6. 7. 3.(금) ~ 2026. 7.22.(수) 18:00까지 (20일간)
- 제출서류 : 서식 1 신청서 및 첨부서류(서식 1 참조)
- 접수처 :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 (방문 및 이메일 접수)
 - 담당자 이메일 : ryudooyoung@korea.kr / 문의전화 : 063-650-5632
- ※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 확인 및 원본 우편(등기) 발송 필수
(주소 :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52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)
-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: 2026년 7월 하순 예정
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-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6년 8월 초 예정 (개별 통보)

4. 응시자격 요건 및 제재 사항

○ 임차인 신청자격 및 요건

1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
가. 나이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
* '26년 사업 기준 : 1986.1.1 ~ 2008.12.31. 출생자
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

* (적용례) 2026년 중 임차인 모집 공고 시 2023.1.1. 이후 경영체 등록자

-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 (임차 등 포함)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

* (적용례) 2021.1.1. 경영주 등록 → 2021.3.10.~2022.12.9(21개월) 군복무 → 2022.12.10. ~ 2023.12.27. 영농(독립경영) :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

다. 영농기반 :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

- 단,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(임차 등 포함)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

라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-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
-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선정 가능

마. 거주지 : 전라북도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하여야하며,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순창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

- 단, 독립경영예정자는 전라북도 외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순창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

바.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인 및 배우자가 동 사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

2) 나이, 영농경력, 병역,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

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
-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(임차 등 포함,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)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

-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(폐업)해야 함

- *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, 가공, 체험사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

-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가 부업 소득활동*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- * 반드시, 영농에 종사하면서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

-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 가능

- 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-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(비농업분야)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

나.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

-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

- 단,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

- * (단,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)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

○ 임차인 의무 및 제재사항

- ① 임대 기간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
 - 사용 시설·설비에 대한 청소 및 관리 등
-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 시간 준수
 - 시설 임차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, 연 최소 72시간
 - 온라인 교육 비율은 70% 이내에서 이내에서 지자체가 결정
 - * 필요 이수시간 = 시설 임차 개월 수 × 6시간(연간 최소 72시간)
 - *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%로 완화
- ③ 재해보험, 자조금,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
 -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
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
 -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
- ④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
- ⑤ 전업적 영농 유지
 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
 - * 다만,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체험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
 - * 영농에 종사하면서,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
 - *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(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)
 -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
 - * 단,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
- ⑥ 스마트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(농정원) 환경정보, 생육 정보 수집 협조
-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

- 임차인이 위 ②,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%를 가산하고, ②,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
- ⑤항을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
 - *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
-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「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」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

5. 선정 방법
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
 - 서류심사는 임차인 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, 요건에 부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평가기준(별표 1)에 따라 평가한다.
- 동점자 발생 시 임대농장 공동경영 팀 지원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.
- 임대 목적시설물 토경 8호의 경우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을 우선 선발하고, 2명이상 지원 시 면접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.

□ 참고 : 순창군 경영실습임대농장 조감도

